

유 학(D-2)

활동범위 및 해당자	<p>○ (교육기관) 「고등교육법」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부설 어학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제외) 다음 대상은 유학 체류자격 대상 교육기관에서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i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(원격대학) ii)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iii)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중 '직업훈련과정' iv) 유학 체류자격을 허용*하는 일부 야간 학위과정을 제외한 야간대학 및 대학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주간 교육과정이 없는 야간대학원, 전문대학 전공심화 야간과정으로서 관할 출입국관서의 야간 학위과정 사전심사를 거친 교육과정 ○ (외국인 유학생) 위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유학(D-2) 및 어학연수(D-4-1, D-4-7) ○ 적용대상별 세부약호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89 1190 1421 1605"> <thead> <tr> <th>약 호</th><th>약 호</th><th>대 상 자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8">학위과정 (D-2)</td><td>D-2-1</td><td>전문학사과정</td></tr> <tr> <td>D-2-2</td><td>학사과정</td></tr> <tr> <td>D-2-3</td><td>석사과정</td></tr> <tr> <td>D-2-4</td><td>박사과정</td></tr> <tr> <td>D-2-5</td><td>연구과정</td></tr> <tr> <td>D-2-6</td><td>교환학생</td></tr> <tr> <td>D-2-7</td><td>일·학습연계 유학</td></tr> <tr> <td>D-2-8</td><td>방문학생</td></tr> <tr> <td rowspan="2">어학연수 (D-4)</td><td>D-4-1</td><td>한국어 연수</td></tr> <tr> <td>D-4-7</td><td>외국어 연수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약 호	약 호	대 상 자	학위과정 (D-2)	D-2-1	전문학사과정	D-2-2	학사과정	D-2-3	석사과정	D-2-4	박사과정	D-2-5	연구과정	D-2-6	교환학생	D-2-7	일·학습연계 유학	D-2-8	방문학생	어학연수 (D-4)	D-4-1	한국어 연수	D-4-7	외국어 연수
약 호	약 호	대 상 자																								
학위과정 (D-2)	D-2-1	전문학사과정																								
	D-2-2	학사과정																								
	D-2-3	석사과정																								
	D-2-4	박사과정																								
	D-2-5	연구과정																								
	D-2-6	교환학생																								
	D-2-7	일·학습연계 유학																								
	D-2-8	방문학생																								
어학연수 (D-4)	D-4-1	한국어 연수																								
	D-4-7	외국어 연수																								
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	2년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증발급 일반	<p>1. 대상 기관</p> <p>○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제4호 및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 (야간대학원 포함*)으로 우리부에서 운영하는 유학생정보시스템 (FIMS)에 등록된 교육기관 및 학술연구기관</p> <p>* 야간대학원은 주간과정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</p>																									

	<p>※ 단, 야간대학, 원격대학 (방송대학, 통신대학, 방송·통신대학, 사이버대학) 및 한국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 (단,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은 인정)은 고등교육법 규정 및 FIMS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유학 (D-2), 어학연수(D-4-1) 사증발급 제외 대상임</p>																						
▶ 목차	2. 제출서류																						
사증발급	공통서류																						
일반	<p>① 사증발급(인정)신청서, 여권사본, 사진 1매(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)</p> <p>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(또는 고유번호증) 사본</p> <p>③ 표준입학허가서 (대학 총·학장 발행)</p> <p>☞ 단,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</p> <p>④ 결핵진단서 (해당자에 한함)</p> <p>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(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)</p> <p>⑥ 최종학력 입증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원본심사를 원칙. 다만, 학위 등 인증보고서 등은 대학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인이 있을 경우 사본도 인정 가능하고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한 학력입증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 - 일반국가 <p>○ 아래 표에서 정한 방식의 학력증명서를 ①아포스티유 (Apostille) 확인 또는 ②영사(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) 확인을 받아 제출</p>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 colspan="3">제 출 서 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어학연수(D-4-1) 과정</td> <td colspan="3">고교 졸업 이상 학력 증명서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학위과정</td> <td rowspan="3">신입학 (D-2-1~ D-2-4)</td> <td>전문학사</td> <td>고교 졸업증명서</td> </tr> <tr> <td>학사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석사</td> <td>학사 졸업증명서</td> </tr> <tr> <td>박사</td> <td>석사 졸업증명서</td> </tr> <tr> <td>편입학</td> <td>전문학사</td> <td colspan="2">고교 졸업증명서 + (전문)학사 재학(졸업)증명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제 출 서 류			어학연수(D-4-1) 과정	고교 졸업 이상 학력 증명서			학위과정	신입학 (D-2-1~ D-2-4)	전문학사	고교 졸업증명서	학사		석사	학사 졸업증명서	박사	석사 졸업증명서	편입학	전문학사	고교 졸업증명서 + (전문)학사 재학(졸업)증명서	
구 분	제 출 서 류																						
어학연수(D-4-1) 과정	고교 졸업 이상 학력 증명서																						
학위과정	신입학 (D-2-1~ D-2-4)	전문학사	고교 졸업증명서																				
		학사																					
		석사	학사 졸업증명서																				
	박사	석사 졸업증명서																					
편입학	전문학사	고교 졸업증명서 + (전문)학사 재학(졸업)증명서																					

▶ 목차

사증발급 일반

	(D-2-1~ D-2-4)	학사	① 고교 졸업증명서 + 학사 재학증명서 또는 ② (전문)학사 졸업증명서
		석사	학사 졸업증명서 + 석사 재학(졸업)증명서
		박사	석사 졸업증명서 + 박사 재학(졸업)증명서
	교환학생 (D-2-6)	전문학사	해외 전문학사 재학증명서
		학사	해외 (전문)학사 재학증명서
		석사	해외 석사 재학증명서
	방문학생 (D-2-8)	박사	해외 박사 재학증명서
		전문학사	고교 졸업증명서 + 해외 전문학사 재학증명서
		학사	고교 졸업증명서 + 해외 (전문)학사 재학증명서
		석사	해외 석사 재학증명서
		박사	해외 박사 재학증명서
	연구유학 (D-2-5)	-	석사 학위 이상 졸업증명서

- 중국 (중국 내 학력·학위 취득자에 한함)

- 학위 과정별로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·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 보고서를 아래 표에서 정한대로 제출

구 분	입 증 내 용		제 출 서 류 (아래 서류 외 불인정)
어학연수(D-4-1) 과정	고교 졸업 이상 학력		◇ 일반고 학력 - (졸업) CHSI(学信网)
신입학 (D-2-1~ D-2-4)	전문 학사	고교 졸업 사실	◇ 전문학사 학력 - (재학) CHSI(学信网) - (졸업) CHSI(学信网)
	학사	학사 졸업 사실	
	석사	석사 졸업 사실	
	박사	석사 졸업 사실	◇ 학사 이상 학력 - (재학) CHSI(学信网) - (졸업) CHSI(学信网) 또는 CDGDC(学位网)
	편입학 (D-2-1~ D-2-4)	고교 졸업 사실 + 전문학사 재학(졸업) 사실	
	학사	고교 졸업 사실 + 학사 재학(졸업) 사실 또는 전문학사 졸업 사실	

	석사	학사 졸업 사실 + 석사 재학(졸업) 사실	
	박사	석사 졸업 사실 + 박사 재학(졸업) 사실	
교환학생 (D-2-6)	전문 학사	중국 전문학사 재학 사실	
	학사	중국 학사 재학 사실	
	석사	중국 석사 재학 사실	
	박사	중국 박사 재학 사실	
방문학생 (D-2-8)	전문 학사	고교 졸업 사실 + 중국 전문학사 재학 사실	
	학사	고교 졸업 사실 + 중국 학사 재학 사실	
	석사	중국 석사 재학 사실	
	박사	중국 박사 재학 사실	
연구유학 (D-2-5)	-	석사 학위 이상 취득 사실	

○ 단,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·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가
발급되지 않는 중등직업학교 등 졸업자(학력인정기관 졸업자에 한함)에
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심사 자료 제출

▶ 목차

구 분	심 사 기 준	비고
중 등 직 업 학 교	보통중등전문학교 (普通中专) Regular Specialized Secondary Schools	① 온라인 발행 i) 지방 교육 당국 발행 졸업증명서* : 주중한국영사확인 필요 * 온라인에서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
	직업고등학교 (职业高中) Vocational High Schools	② 오프라인 발행 ('학교정보확인서' 제출 필수) i) 지방 교육 당국 발행 졸업증명서 : 주중한국영사확인 필요 ii) 학교 자체 발행 졸업증명서 : 성교육청(시교육국) 확인 + 주중한국영사확인 필요
	성인중등전문학교 (成人中专) Adult Specialized Secondary Schools	택 1
	기술공업학교 (技工学校) Skilled Workers Schools	인적자원사회보장부 공식 홈페이지 (http://www.mohrss.gov.cn/)온라인 조회본 + 주중한국영사확인 * 온라인에서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

기타 고졸학력 인정 학교	학교 자체 발행 졸업증명서 + 주중한국영사확인 ※설립허가증(사업단위법인증서(事业单位法人证书)) 또는 민관학교판학허가증(民办学校办学许可证) 사본 제출 필수 (단, 학력교육 과정만 인정, 공증 불필요)	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⑦ 재정능력 입증서류

-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
- 베트남의 경우 은행에서 발행한 지급유보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증명서

과정별 추가 제출서류

특정 연구과정 (D-2-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종학력 입증서류(석사학위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) ※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는 본국 학사과정 재학 중인 사람도 허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대학이 연구과정 유학생(D-2-5)을 초청하는 경우 ② THE(Times Higer Education) 선정 200대 또는 QS(Quacquarelli Symonds) 선정 상위 500위 이내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 연구과정 유학생(D-2-5)을 초청하는 경우 -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(잔고증명,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) - 특정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(총장의 연구생확인서 등)
교환학생 (D-2-6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속 (본국)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-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 (초청 대학의 공문,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 협정서 등) - 1학기 이상을 외국 정규대학에서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(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)

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

3. 사증 발급 대상

<대상별 사증 발급 유형표 -2019.10.1부 적용>

대학별		국가별	학생유형	사증 발급	사증발급 인정서	전자 비자
입 종 대	우수 인증대	국적무관	어학연수(D41)	○	○	×
			유학(D21~8)	○	○	○
	인증대	국적무관	어학연수(D41), 유학(D2)	○	×	×
			석사(D23), 박사(D24)	○	×	○
일반대		일반국가	어학연수(D41), 유학(D2)	○	×	×
		중국, 베트남,	어학연수(D41)	×	○	×

		몽골,우즈벡	유학(D2)	○	×	×
하 위 대	컨설팅대	일반국가	어학연수(D41), 유학(D2)	○	×	×
		중국, 베트남, 몽골, 우즈벡	D21~5, D27	○	×	×
			D41, D26, D28	×	○	×
	비자제한	국적무관	D24, D25, D26	×	○	×

※ 단 **쿠바**, 시리아, 마케도니아, 코소보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만 발급

1. 발급 대상

-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이외 유학생
 - 단, 우수인증대 유학생은 사증발급도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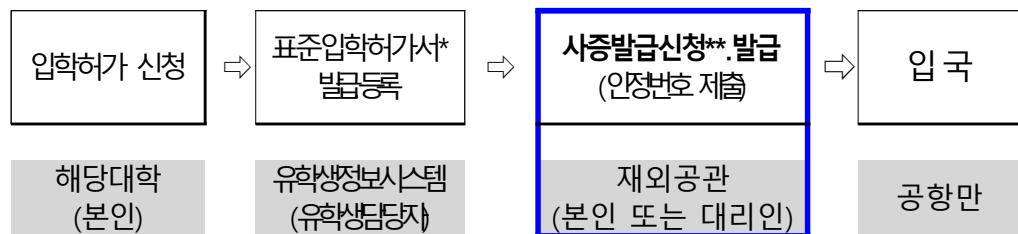
2. 신청 장소

- 사증 발급(재외공관) :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

3. 발급 절차

공관장 제량으로
발급할 수 있는
사증

▶ 목차



* 입학이 결정되면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하여 우리부 유학생정보시스템 (FIMS)에 등록 (허가서 왼쪽 상단에 표준입학허가서 번호 생성)하고 총.학장 직인을 날인한 후 유학생에게 송부

4. 발급 내용

대상자	약 호	발급내용
전문학사~박사과정	D-2-1 ~ D-2-4	체류기간 2년 이내, 단수
연구과정	D-2-5	체류기간 1년 이내, 단수
교환학생	D-2-6	체류기간 1년 이내, 단수
국방부 초청 수탁교육생	D-2-2 ~ D-2-4	체류기간 2년 이내, 단수
방문학생	D-2-8	체류기간 1년 이내, 단수
인도국민	D-2-1, D-2-5	체류기간 2년, 유효기간 5년 복수 ※ 단, 교육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교육기간 동안 유효한 복수 사증
어학연수생	D-4-1, D-4-7	체류기간 6개월 이내, 단수

<p>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</p> <p>▶ 목차</p>	<p>1. 발급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우대) 우수인증대학(유학 및 어학연수) ○ (관리) 쿠바, 시리아, 마케도니아, 코소보 국민 유학 및 어학연수 ○ (관리) 중국, 베트남, 몽골, 우즈베키스탄 국민 중 아래 대상자 (단,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는 사증발급 가능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하위대학 어학연수, 교환학생, 방문학생 - 일반대학 어학연수 <p>2. 신청 장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증발급인정서(국내) : 입학예정대학* 소재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온라인신청 : 사증포털시스템(www.visa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 (유학생 담당자에 한함) * 분교 입학생은 분교소재지(사업자등록증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소재지)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에서 처리 <p>3. 발급절차</p> <pre> graph LR A[입학허가 신청] --> B[표준입학허가서 발급등록] B --> C[사증발급인정서 신청·발급] C --> D[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 (사무소·출장소) (본인 또는 초청자)] D --> E[사증발급신청· 발급 (인정번호 제출)] E --> F[입국] </pre> <p>1. 발급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수 인증대학 : 모든 유학과정(D-2-1~D-2-8) ○ 인증대 : 석사(D-2-3) 또는 박사(D-2-4) 과정 입학생 ○ 다만, 쿠바, 시리아, 마케도니아, 코소보 국적 유학생 제외 <p>2. 신청 장소</p>
<p>전자비자</p>	<p>1. 발급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수 인증대학 : 모든 유학과정(D-2-1~D-2-8) ○ 인증대 : 석사(D-2-3) 또는 박사(D-2-4) 과정 입학생 ○ 다만, 쿠바, 시리아, 마케도니아, 코소보 국적 유학생 제외 <p>2. 신청 장소</p>

	<p>○ 사증포털시스템(www.visa.go.kr)</p> <p>3. 사증발급 일반 사항 준용</p>
참고사항	<p>☞ 전문학사, 어학연수, 단기유학생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동반사증(F-3) 발급 제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 <p>Q. 직업전문학교 학생은 유학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?</p> <p>A.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의하면 직업전문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「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」은 고령자·장애인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 습득·향상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설지정을 받은 기술전문학원임.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교육과정에 참가할 목적으로 유학(D-2)사증을 발급을 신청하는 것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.</p>